

결핵검진등 의무이행 관련 안내

① 이행 대상기관

-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
-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
-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
-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

② 검진 시행주체 및 대상

- (주체)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·학교의 장
- (대상) 위의 기관·학교 등의 종사자·교직원
 - 기관 내 모든 종사자 포함
 - 고용형태(직·간접고용) 또는 고용기간(장·단기근로)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·감독 하에 있는 파견·도급·용역 종사자도 포함

* 사회복지요원, 자원봉사자,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, 실습생 등 기관·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종사자로 간주하기 어려우나, 기관장 등이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결핵검진등 실시 권고할 수 있음

③ 검진 주기 및 시기

구분	결핵검진	잠복결핵감염검진
신규 채용자	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	신규 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
복직자 ¹⁾	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	소속된 기간 중 1회
기존 종사자	매년 실시	소속된 기간 중 1회
		고위험 종사자 ²⁾ 는 매년

1) 6개월 이상 휴직·파견 등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자
2)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하는 고위험 종사자

- 결핵환자를 검진·치료하는 의료인 (의사·치과의사·한의사·조산사 및 간호사)
-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(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사, 치과위생사)
- 결핵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

4] 검진 방법

- (결핵검진) 흉부X선 검사 또는 결핵균 검사 등
 - ※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같음 가능 (국가건강검진, 보건증 등)
- (잠복결핵감염 검진)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(TST)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(IGRA)
 - ※ 결핵·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거나, 이전 면역학적 검사 상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문진과 진찰*로 대체 가능함. 문진과 진찰로 대체한 경우, 실시한 사실을 지자체의 장이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(소견서, 확인서 등)가 있어야 함

5] 과태료

- (금액) 200만원 이하

* 1차 위반 100만원, 2차 위반 150만원,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부과

예) 올해 2월 점검 시 직원 5명에 대해 검진 미실시 사례를 적발하여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면, 내년 2월에도 2건 적발 시 2차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 과태료 부과

- (부과권자)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
- (부과대상)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·학교의 장
- 과태료 감경 또는 증액 부과
 - 법 시행령 [별표]에 따라 과태료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의 감경 또는 늘려 부과 가능
 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내로 감경 가능

결핵검진등 의무이행 관련 Q&A

Q '결핵검진등'이란?

A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포함하는 개념 (근거: 「결핵예방법」 제10조)

Q 결핵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각각 다른 검사인가요?

A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목적과 검사방법이 상이한 다른 검사로 두 가지 검사를 각각 실시해야 함

구분	결핵검진	잠복결핵감염검진
검사목적	활동성 결핵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	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
검사방법	임상적,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, 객담(喀痰)의 결핵균 검사	면역학적 검사 *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(IGRA검사),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(TST검사)

Q 검진 의무 기관·학교 등의 종사자·교직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
A 고용의 형태(직접, 간접고용)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·학교 등의 장의 지휘·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종사자·교직원으로 볼 수 있음

- 외부기관 파견 강사 등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관·학교의 장 등의 지휘 감독 하에 있다면, 기관·학교 등에서 종사하는 종사자·교직원에 해당
- 하지만 사회복무요원, 자원봉사자, 개인이 고용한 간병인 등 기관·학교 등과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, 종사자·교직원으로 보기 힘들나, 결핵 감염 위험성 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를 권장하고 있음

Q 매년 실시하는 결핵검진에서 '매년'의 기준은 무엇인가요?

A 통상 매년이라고 하면 1월부터 12월까지를 의미함

Q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'다른 기관·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'는 어떤 의미인가요?

A 소속기관·학교 등을 변경 시 마다 다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, 동 기관·학교 간의 이동(A의료기관에서 B의료기관으로 소속을 변경) 뿐만 아니라 타 기관·학교 간의 이동(A의료기관에서 B산후조리원으로 소속을 변경)에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1회만 실시하면 됨

Q 임신부인 경우에도 결핵검진을 흉부X선 검사 실시해야 하나요?

A 결핵검진은 임상적, 방사선학 또는 조직학적 검사, 가래의 결핵균검사 중 어느 한 기준을 충족하여도 인정됨

Q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신규채용자도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나요?

A 「결핵예방법」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규채용된 사람은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도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함

Q 결핵검진등을 실시했다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?

A 종사자·교직원 명부와 검진 기록 등을 대조하여 점검할 시 지자체의 장이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

Q 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후 보고사항이 따로 있나요?

A 「결핵예방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따라 기관·학교 장은 종사자·교직원의 결핵검진 등 사항이 포함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하면 됨.

Q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, 검진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요?

A 보건소 등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만 검진결과를 등록관리하므로, 개별적으로 조회 가능한 방법은 없음,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기록을 발급받아야 함

Q 종사자·교직원이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양성인 이유로 기관·학교의 장이 불이익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

A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업무 종사 일시 제한, 취업 거부 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 하므로 (「결핵예방법」 제13조),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

Q 기관·학교의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·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A 기관·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·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 하였으나 종사자·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. 다만,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(「결핵예방법 시행령」 별표)

-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이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②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③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
- ④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